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방부장관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, 전사자 유해 소재의 허위제보·증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유해발굴 업무여건 보장을 위해 개정을 추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완(제3조)

- 1)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등이 부재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추가 및 신설할 필요가 있음.

*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시 개선사항으로 권고('24. 3. 25.)

- 2)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규정을 신설함.

- 3) 특정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유착관계 등 부패행위 방지,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이 가능하며 위원의 심의 사항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
나. 포상금 지급 규정 보완(제12조)

- 1) 포상금 지급 시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허위제보·증언하는 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미비하여 허위제보·증언 시에는 포상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.
- 2) 허위제보·증언 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허위제보·증언 시 포상금 미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함.
- 3)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허위 제보·증언 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르게 합리적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
다. 전사자유해 조사·발굴 통지서 발송책임 조정(제7조 별지1호서식)

- 1) 유해발굴 지역 선정 및 지역별 토지소유주와의 협조 등을 관할부대장이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신속한 업무추진과 연속적인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발송책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.
- 2) 전사자유해 조사·발굴 통지의 효율성 및 연속적인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관할부대장이 조사·발굴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.
- 3) 전사자유해 조사·발굴 통지의 발송책임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에서 관할부대장으로 조정함으로써 유해발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유단, 각군본부, 육.군단사령부 등의 '의견없음'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결과 추후 확인 예정

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 중 “연임할 수 있다,”를 “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심의사항이 본인과 관련되는 경우
2. 심의대상이 된 대상자와 친·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
3. 그 밖의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②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3조의3(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위원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포상금 지급 심의에서 허위제보·증언으로 확인 시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유해발굴감식단장”을 “제0000부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) ① ~ ④ (생 략)	제3조(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<u>연임할 수 있다.</u>	⑤ ----- -----, <u>1회에 한해 연 임할 수 있다.</u>
⑥ ~ ⑩ (생 략)	⑥ ~ ⑩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3조의2(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 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 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 1. 심의사항이 본인과 관련되는 <u>경우</u> 2. 심의대상이 된 대상자와 친 · 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 을 <u>경우</u> 3. 그 밖의 공정한 심의가 어려 운 사정이 있는 <u>경우</u> ②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이해당 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 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 다.

<신 설> 제12조(포상금 지급기준)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<단서 신설>	③ <u>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</u> 제3조의3(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 해촉)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<u>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2. <u>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u> 3. <u>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위원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</u> 4. <u>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 제12조(포상금 지급기준) ----- ----- ----- --. <u>다만, 포상금 지급 심의에서 허위제보·증언으로 확인 시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병영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254